

민원 일반민원 민원질의응답·답변원문

민원 질의응답·답변원문



사례

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대학병원도 성범죄경력조회가 필수인가요?

2019-10-29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부속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조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6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학은 2018.7.17. 개정 시행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해당됩니다.

나.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시설의 부속시설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포함됩니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다. 따라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 및 운영)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라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기관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3. 그 밖에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취업제한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소OO 사무관(02-2100-6408)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목록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오류신고·이용문의

뷰어다운로드

유관사이트 바로가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 / 시스템관련 이용안내 : 1600-8172(대표번호) / 070-4266-7797(일반전화) 상

담안내 09:00~18:00(평일)

COPYRIGHT(c)국민권익위원회 All Rights Reserved.